

Shadow wage 추정법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평가

최 윤 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 경 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임 찬 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강 경 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유 소 이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52.6%에 달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재해·상해·이혼 등 현실적인 문제를 당면하였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농업의 중요한 인력원이면서도 무임금 노동원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평균 11시간 이상 참여하고 있는 농업노동과 5시간 이상 참여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hadow wage를 추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농업종사자의 경우 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농업의 특성상 지역단위 통상임금 수준이 폭넓지 못하고, 개별 농가의 소득원 및 소득규모가 모두 상이하기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여성의 농업노동이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시장임금을 보다 생산함수와 관련하여 노동의 한계생산성 또는 shadow wage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im, 2002). 농업노동의 shadow wage인 한계생산물가치는 농업노동시간이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을 생산함수로부터 추정하고, 추정된 계수에 소득과 시간비율을 곱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shadow wage는 Heckman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시장노동에 종사하는 대신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임금을 적용하는 것 보다 추정된 농업노동의 shadow wage와 농업노동 시간을 적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모형의 실증적 검증을 위하여 농가주부와 경영주를 대상으로 2002년 10월 25일 ~11월 13일까지 미택농가 180호를 대상으로 설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가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편이 56세, 부인이 52세이었으며 가족은 평균 3.6명이었고 농가소득은 약 1,540만원, 생산비는 1,910만원으로 나타났다.

Shadow wage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2만 3천원으로, 월소득으로 계산하면 7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hadow wage 추정시 적용한 소득이 조사대상자들이 부정확하게 응답함으로써 응답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가 다소 낮게 추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shadow wage는 조사된 소득과 생산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조사자료가 요구되어진다.